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확정하는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

비상계엄 122일, 변론종결 38일만에 윤 탄핵심판 결론

111일 간 심리... 노무현 63일, 박근혜 91일
73일 동안 11차례 변론... 증인 16명 신문해
선고기일 지정 늦어지며 현재 향한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오는 4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만의 선고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기일을 마친 후 38일 만에 결론을 내놓게 됐다. 전례에 비해 최종 변론 2주 안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최장 심리를 기록했다.
현재는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각각 63일, 91일 동안 심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난 지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탄핵의 단초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29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한 비상계엄령 선포였다.
당시 국회는 계엄군의 국회 투입과 보좌진, 시민들과의 대치 끝에 이튿날 오전 0시2분 비상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첫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불참해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어 2차 발의가 추진돼 지난해 12월 14일 재석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재는 가결 당일 오후 6시15분께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주말을 넘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고 헌법연구관 10여명으로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
주심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지명으로

취임한 정 재판관이 심리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자, 현재는 컴퓨터 전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한 것이 라면서 선을 그었다.
탄핵안 가결 당시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식이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다만 지난 1월 2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으로 논란이 일부 해소된 상태다.
현재는 심리 초반부터 '신속·공정' 원칙을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앞서 접수된 탄핵 사건이 많지만,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는 탄핵심판의 준비 절차 성격인 변론준비기일을 지난해 12월 27일과 지난 1월 3일 두 차례 진행하고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재판인 첫 변론기일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는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빼겠다는 국회 측의 요청을 수용했고, 윤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 동일성이 사라졌으며 각하를 주장하

고 있다.
지난 1월 21일 현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처음 출석했다. 앞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한 첫 피정규인 당사자가 됐다.
탄핵심판의 증인 신문은 지난 1월 23일 4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총 16명의 증인이 신문을 받았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의 핵심 증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유일하게 두 번 출석했다.(2면에 계속) /뉴스

주문 낭독 즉시 파면·복귀 효력

헌법재판 실무제요 "탄핵의 결정 효력은 선고 즉시" 문 권한대행 주문 낭독 직전 시계 확인 후 결정 선고 앞서 기각 선고된 탄핵심판도 결정문에 시각 명시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모인다.
1일 현재의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 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고는 문행배 현재 소장 권한대행이 결정을 담은 주문을 낭독하는 바로 그 시각이다.
'기각'이나 '각하' 주문을 읽는 즉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결정문을 윤 대통령 측이나 대통령실 등에 보낼 필요는 없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라 불복 절차도 없다.
선고일시는 시간과 분까지 결정문에 적힌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례를 보면 '2025.3.24. 10:01'(오전 10시 1분)이라 표시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3.10. 11:21'이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 실무제요는 "선고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문 권한대행은 주문을 읽기 전 "시계를 확인하겠다"며 대심판정 내 시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각각 28분, 21분 걸렸다. 선고에 앞서 그간의 절차와 경과를 모두 발

언 형태로 발언하기도 했다.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도 주문을 읽는 데 20여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근거 중 하나는 '8대 0' 만장일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 실무제요는 선고 절차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인 경우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고 적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먼저 탄핵심판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이유와 판단을 밝힌다.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기각 또는 파면이라면 이어 쟁점마다 재판부의 결정 이유와 판단의 요점을 각각 설명한다. 주문은 맨 마지막이다.
다만 별도의 모두발언 등이 덧붙여진다면 선고 시간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물론 결정부터 나올 수도 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례처럼 가장 먼저 주문을 읽고, 법정 의견(다수)과 소수 의견 순으로 그 이유와 판단을 밝히는 식이 된다.
선고가 꼭 이런 순서로 진행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소수 의견이 있어도 재판부 재량으로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보통의 사건과는 다른 절차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뉴스

'해풍법에 명칭도 변경' 전라남특자도법 수정 불가피

정부 주도 발전사업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허가·취소권 지방 이양을 담은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법안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명칭도 '전남'에서 '전라남'으로 변경돼 법안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입법 추진 4년 만으로, 본격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6년 3월 26일부터다.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입지 적정성 검토, 4~6년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고 있다.
총리실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와 부처합동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 설치되고, 산업부와 해양부는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민관 협의와 환경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사업자는 입찰로 선정하게 된다. 사업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관련 28개 법안은 죄다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특별법상 이같은 조항은 지난해 국회에 상정된 전라남특자도 특별법 제38조, 제39조와 중복돼 특자도 관련 법안의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허가권 도지사 이양→정부 주도 발전사업 추진
전남특자도→'전라남' 특자도 특별법 명칭도 변경

제38조는 재생에너지 중 40MW(4만 kW) 미만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도지사 권한으로 하고, 40MW 초과 사업은 산업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지사 산하 위원회를 뒤 3MW 이상 발전사업 인·허가를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제39조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특례조항으로,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정부 주도를 공식화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률 중복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정부 권한 강화, 도지사 권한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연구원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과 수요처 확보, 전력 계통 등이 얽혀있긴 하지만,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 관련 산업에 탄력이 붙고 투자유치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수요처가 전남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는 전남의 성장동력이 떨어질 여지도 없진 않다"고 내다봤다.
특자도 특례보다 큰 그룹을 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전남산 신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 파는 게 용이하지만 장기적으

로는 빨대효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란이 일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일한다.
전남도 관계자도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인 만큼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으로, 에너지 기업들의 전남행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지만 특자도 조항과는 겹치는 측면이 있어 어떤 식으로든 손질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책실효성이 있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안에 전남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명칭도 변경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전남특자도 특별법 발의 후 전라도(全羅道)가 전주의 '전(全)'과 나주의 '라(羅)'가 합쳐진 지명인데, '라'가 빠지면 '1000년 역사성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라남특자도'로 변경된 만큼 법안 명칭도 수정해야 할 처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문금주 의원은 "법안과 명칭 변경은 상임위 법안소위 예나 법사위에서 첨삭을 통해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생산지에서 수요가 창출되고, 가격 또한 차등화하는 등 여러 우려사항에 대한 대응책도 이미 마련됐거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성호 기자

2025 청산도 슬로시티 축제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
2025년 4월 5일(토) ~ 5월 4일(일)
주최 : 완도군
주관 : 청산도슬로시티축제추진위원회